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조정식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15983
----------	-------

발의연월일 : 2026. 1. 12.

발 의 자 : 조정식 · 이수진 · 정준호
김문수 · 한정애 · 백선희
김영환 · 김병주 · 이정문
박선원 의원(10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플랫폼운송사업자(이하 “사업자”)에게 여객자동차운송시장 안정기여금(이하 “기여금”)을 납부하도록 규정하면서, 그 부과 요율 등 핵심적인 사항까지 시행령에 위임하고 있음.

그런데, 기여금은 사업자에게 금전적 지급 의무를 부과하는 것으로 법률유보의 원칙에 따라 본질적이고 중요한 사항인 금액의 상한 등 그 부과요건의 주요 사항은 법률에 규정하고 세부적인 기준은 하위법령에 위임하도록 개선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시행령에 규정되어 있는 기여금의 상한·부과 요율 등 그 부과요건의 주요 사항을 현행법에 명시하여 사업자의 기여금에 대한 예측가능성을 제고하고자 함(안 제49조의5).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9조의5제1항 중 “허가대수 또는 운행횟수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여객자동차운송시장안정기여금(이하 “기여금”이라 한다)을”을 “분기별로 해당 분기의 전체 운송매출액(운송에 부가되는 서비스를 제공하여 발생하는 매출액을 포함한다)에 100분의 5를 곱한 금액을 여객자동차운송시장안정기여금(이하 “기여금”이라 한다)으로”로 하고, 같은 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2항부터 제6항까지를 각각 제3항부터 제7항까지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플랫폼운송사업자의 신청에 따라 운행횟수당 800원이나 제49조의3에 따라 허가받은 사업용 자동차의 대수(이하 “허가대수”라 한다)당 월 40만원을 분기별로 계산한 금액으로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플랫폼운송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기준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의 기여금은 제1항 본문 또는 단서에 따라 계산한 금액의 100분의 50(허가대수가 200대 미만인 경우에는 제1항 본문 또는 단서에 따라 계산한 금액의 100분의 25)에 상당하는 금액으로 한다.

1. 「중소기업창업 지원법」에 따른 창업기업일 것
2. 허가대수가 300대 미만일 것

부 칙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49조의5(기여금의 납부 등) ① 플랫폼운송사업자는 <u>허가대수</u> <u>또는 운행횟수 등을 고려하여</u> <u>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여객자동</u> <u>차운송시장안정기여금(이하</u> <u>“기여금”이라 한다)을</u> 국토교통 부장관에게 납부하여야 한다. <u><단서 신설></u> <u><신설></u>	제49조의5(기여금의 납부 등) ① -----<u>분기별로</u> <u>해당 분기의 전체 운송매출액</u> <u>(운송에 부가되는 서비스를 제</u> <u>공하여 발생하는 매출액을 포</u> <u>함한다)에 100분의 5를 곱한</u> <u>금액을 여객자동차운송시장안</u> <u>정기여금(이하 “기여금”이라 한</u> <u>다)으로</u>----- -----<u>. 다만, 플랫폼</u> <u>운송사업자의 신청에 따라 운</u> <u>행횟수당 800원이나 제49조의3</u> <u>에 따라 허가받은 사업용 자동</u> <u>차의 대수(이하 “허가대수”라</u> <u>한다)당 월 40만원을 분기별로</u> <u>계산한 금액으로 할 수 있다.</u>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플랫폼 운송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기 준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의 기 여금은 제1항 본문 또는 단서 에 따라 계산한 금액의 100분 의 50(허가대수가 200대 미만 인 경우에는 제1항 본문 또는

② ~ ⑥ (생략)	<u>단서에 따라 계산한 금액의 100분의 25)에 상당하는 금액으로 한다.</u> <u>1. 「중소기업창업 지원법」에 따른 창업기업일 것</u> <u>2. 허가대수가 300대 미만일 것</u> <u>③ ~ ⑦ (현행 제2항부터 제6항까지와 같음)</u>
-------------------	--